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시행세칙의 목적)
본 세칙은 PGK 규약 제4장 "총회"와 제6장 "기구" 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선거관리위원회'(약칭 : PGK 선거관리위원회, PGK 선관위, 선관위)이다.

제2장 지위와 구성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① PGK 비상설기구로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대표단과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거에 대한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② 선거에 대한 유일한 유권해석기관이며, 시행세칙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선거에 출마한 정회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일 한달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임시총회의 경우엔 임시총회일 14일전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일반회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에는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원 확정 2일 이내에 해당 인원수의 총준위원을 충원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구성한 날로부터 선거 관련 업무 종료 시까지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해산을 선언한다.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제6조 (역할 및 업무)

① 선거관련 일정 및 주요 사항들을 공고한다.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정
2. 후보등록 일정 및 등록결과, 후보 번호
3. 유세일정과 필요시 후보(또는 선본)간 연석회의
4. 선거운동 일정
5. 선거운동 규칙 위반사항 및 징계내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선거기간 중 유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을 홍보 및 선전한다.
1. 각 후보 포스터(또는 웹포스터)와 선거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부착(온라인 공고도 가능)
2. 선거일정 홍보물 제작 및 부착(온라인 공고도 가능)
3. 투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안내
4.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홍보 및 선전사업

③ 선거기간 중 각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물품(투표용지 등)을 제작, 준비한다.

④ 투,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
2. 투표소 설치 및 관리
3.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⑤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을 알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후보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 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선관위에서 정하여 각 후보에게 준비케 한다.
1. 각 후보(또는 선본)의 출사표
2. 각 후보(또는 선본)의 정책자료(필요시 정책자료집 제작 가능)
3. 기타 각 후보(또는 선본)의 정책홍보를 위한 자료

⑥ 대표단 및 운영위원 선거 전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한다.
1.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입장의 개진과 공표
2. 특정 후보 또는 선본에 대한 사실왜곡이나 비방 혹은 노골적인 지지를 담은 홍보물이나 의견의 경우 배포의 자제 및 내용정정, 주장철회를 권고
3. 선거에 관련된 허위사실 기재 게시물(온라인 포함) 또는 익명 게시물의 발견 시 선관위원장 직권으로 즉시 철거또는 삭제하며, 그 사유에 대한 대중적 공고를 한다.

⑦ 선거전반의 유권해석과 징계, 권고 및 이의제기의 처리를 총괄한다.

⑧ 기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권한을 갖는다.

② 선거시행세칙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다.

③ 후보(또는 선본) 간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

④ 각 후보(또는 선본)이 본 세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선관위가 본 세칙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후보간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⑥ 후보(또는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후보(또는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사무국 협의하여 뉴스레터에 '선거관리위원회 할당면'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선거 운영비용)
① 선관위의 운영비용은 사무국에서 충당한다.
② 선관위는 일정 액수를 각 후보(또는 선본)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 금액은 각 선본과 협의 하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③ 선관위는 각 후보(또는 선본) 지원 내역을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장 선거 일정

제9조 (선거일정 및 선거 공고)
① 추천 및 등록기간, 유세, 투표, 개표로 이루어지는 선거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에 관한 결정은 선관위에게 위임한다.
②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인해 선거 및 투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그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간담회/정책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 추천 및 등록 기간 : 제9조 제1항에 의한다.
② 후보자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10인 이상이 서명한 후보 추천서
  2. 후보자 약력, 후보자 인물사진(해상도 300dpi 이상의 file)

제1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시점으로부터 투표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제12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을 기재하는 명부이다.
② 선거인명부의 작성 기준일은 투표일 한달 전으로 한다.

제13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기간 : 제9조 제1항에 의한다.
② 개표 : 제9조 제1항에 의한다.
③ 개표 결과 발표 및 당선 공고 : 개표 마감 직후에 하도록 한다.

제5장 선거운동규칙

제14조 (유세)

① 유세의 사회는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② 유세장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후보(또는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유세에서의 순서는 후보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각 후보 당 유세시간은 동일해야 한다.

제15조 (후보 간담회, 정책토론회 및 개인 유세)
① 각 후보(또는 선본)가 후보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면, 선관위는 각 후보(또는 선본)에게 필요성 유무를 물어본 후 판단하여 결정한다. 일정 및 장소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② 후보 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선전매체)
① 포스터 : 필요시 각 후보(또는 선본)는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포스터는 선관위에서 내용을 검수후 배포, 부착할 수 있다.
② 자료집 : 선관위 주관으로 공동선거자료집 1종을 제작한다.
③ 동영상 : 각 후보(또는 선본)는 후보와 선본의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홍보 동영상의 최대 시간은 5분을 넘기지 않는다.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17조 (투표원칙과 투표권)
투표의 원칙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이며, 본 회의 조합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제18조 (투표 절차 및 행위)
투표 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도착 → 선거인명부 검색 →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자 신상 확인 → 투표자 직접 서명 → 투표용지 배부 → 투표자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자가 투표함에 직접 투표

제20조 (결선투표)
득표수가 동표가 나오거나 이와 유사한 이유로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시, 최다득표 후보(또는 선본)와 두 번째 다득표 후보(또는 선본)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1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선관위에서 진행한다.
③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④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⑤ 본 세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7장 징계

제22조 (징계절차)
① 선관위는 후보 또는 선본이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관위의 결정사항(이하 선거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부 의결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선거규칙을 위반한 후보 또는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조합원들에게 알린다.
④ 선관위는 선본에게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해야 한다. 필요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23조 (권고)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제24조 (주의, 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 정도가 권고수준 초과일 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③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되며, 경고 2회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④ 주의와 경고는 해당 징계의 사유와 이후의 경과에 대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5조 (이의제기)
① 후보 또는 선본은 선관위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하루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후보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고 결정한다.
③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인준되는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